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6.8.29(월) 17:00

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인수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8월 19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8월 22일

3. 제안 이유

○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 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매년 농촌융복합산업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3조)
- 나. 출연.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 및 예산지원 규정 (안 제4조)
- 다.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시장개척과 판로지원(안 제5조)
- 라.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·개발지원(안 제7조)
- 마.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어촌개발기금 융자(안 제8조)
- 바.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'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

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.